

- 녹색 구매 방침 -

1. 목적

본 방침은 대한전선(주)의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방침은 대한전선(주)의 제품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계약 중 구매팀의 구매활동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3. 주요 인증 제도

구분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인증기준	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참조	GR제품정보시스템 참조
인증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greenproduct.go.kr	edp.or.kr	buygr.or.kr

4. 용어의 정의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인증별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 환경 표지 인증 품목 :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등 165개 제품군
 - 나. 저탄소 제품 : 의류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듬 제품
 - 다. 우수재활용(GR) 인증 :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등 11개 분야
- (2) 환경관련 인증물품 : 국내 및 해외 인증기관(공인/민간)의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보유한 물품

- (4) “녹색구매”란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다. 기업은 원부자재에 대한 조달 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구매계약과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활동을 뜻한다.
- (5) “구매담당”이란 구매 관련 규정에 의해 구매업무의 위임을 받은 자로 구매관리규칙 제5조 각호를 따른다.
- (6) “구매팀”란 구매업무 모니터링을 통해 구매 리스크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구매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녹색구매 기본원칙

- (1) 회사 환경경영이념과 구매규정을 준수하여 녹색구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녹색구매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물품 발굴과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3)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사군을 확보하고 친환경물품의 구매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6. 녹색구매 업무범위

- (1) 구매팀의 녹색구매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친환경물품 기준설정 및 타부서에서 물품구매 요청 시 친환경물품 우선 안내
 - 나. 물품 구매시 품질, 가격 이외에 친환경물품 우대 검토
 - 다. 공급사에 대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안내 및 친환경물품 발굴
 - 라. 친환경물품 구매실적 관리
- (2) 구매팀은 본 표준을 관리하고 공급사 평가 시 친환경물품의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보유 유무 및 환경 통제체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서 보유 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과 한다.

7. 공급업체의 책무

- (1) 물품계약시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등 친환경물품 해당 여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한다.
- (2) 물품계약후 공급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 시 대한전선(주)에 고지해야한다.
- (3) 공급물품의 제조 시 환경영향 저감을 노력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해야한다.
- (4) 그 밖에 대한전선(주)가 요청하는 녹색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한다.

8. 공급업체 지원

- 회사의 녹색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장기계약 체결
 - 나. 공급물품의 환경영향 저감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다. 녹색구매 및 환경경영활동 관련 교육 및 자문 우선 적용
 - 라. 그 밖에 구매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